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문제*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aws

Pil Jae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 Heungduk-gu,
Cheongju, Korea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made for enhancing not only business persons' oblig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also users' right. But some logical problem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xisting related laws were found out. So, this thesis tries to suggest new direc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the way of revising the existing laws. Nowadays, threat to personal information from SNS, big data, or cloud computing is so serious that the existing laws cannot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the right time to build up international-leve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modify the existing laws and increas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secure smart society.

Key words: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ct, Privacy Act.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B00380).

** Tel. +82-43-261-2620. Fax. +82-43-261-3452. E-mail. lawncm@chungbuk.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Dec. 10, 2013 / Revised: Dec. 26, 2013 / Accepted: Jan. 15, 2014

1738-8368 © 2014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 부족이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의 실효성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프라이버시 정책

1. 서론

정부 정책과 사업 중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중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프 골드 세이프거브 위원은 “많은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가 자기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른다”라며 “소비자는 인터넷 서비스나 네트워크가 자기를 추적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추적한 정보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며, 알리고 싶지 않은 것과 추적당하고 싶지 않은 수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이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을 했는데 온라인 서비스에서 무료는 무료가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돈 대신 정보를 대신 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온라인 광고 회사가 이메일이나 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얻어가는 게 전혀 적지 않다는 뜻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1년을 훌쩍 지나고 있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올해에도 어김없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KT는 올해 2012년 2월부터 약 5개월간 불법 텔레마케팅(TM) 업체로부터 총 879만435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요금제, 기기변경일 등의 고객정보를 탈취 당했다. EBS는 2012년 5월 홈페이지를 해킹 당하면서 422만5681명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 유선·휴대전화 번호 등을 유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들 업체들에게 각각 7억53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규제의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중소기업들의 수준 역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실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정작 큰 효과는 누리지 못했다.

스마트시대 기술의 발전은 누구든지(anyone),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원하는 개인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 부족이다. 이에 전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

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의 실효성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논문 및 국가연구보고서, 각종 세미나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헌조사 연구방법론에 의하여 기본 조사를 수행하고, 국내외 관련 사이트의 검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범위의 변화와 체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헌법상의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의 재정립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영체계의 현황

1. 개인정보의 정의

법률상의 개인정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그 자체로는 직접 알아보기 힘들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로 보고 있으며, 2011년 9월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로 규정 했었다.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Table 1> And Specific Examples of the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구분		내용
일반 정보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정보, IP주소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 도서, 비디오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내역, 식품 등 물품 구매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내역
	신념/사상정보	•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정보	• 개인 신용 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법적정보	• 전과, 범죄 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정보	• 통화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이나 전화메시지
	위치정보	•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병역정보	•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화상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개인정보의 영역은 <Figur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웹, 위치추적, 텔레매틱스, 전자주민카드, 가상현실 등의 서비스로 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서 점차 확대되어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개인의 생각 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영역의 변화는 법·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 즉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이 법률들이 제정되고 또한 신규 법·제도의 필요성으로 변화 된다.



<Figure 1> Changes in the Area of Personal Information(20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운영체계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금번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대상을 공공과 민간영역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제2조). 또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동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5조~제22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제24조).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험성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 최소화 원칙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구축·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제33조).

(5) 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6)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5조-제39조). 이는 그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기되어 왔던 자

기정보통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일반법에 명문화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신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 도입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또한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제40조-제50조). 이와 더불어, 법 준수의 경각심과 사회적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해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하고 있다(제51조-제57조).

2)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체계의 변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제공, 유출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추진됐다.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하고 온·오프라인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는 개인정보의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도 안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고도화 및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2013년에는 보호수준의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규제 정착과 연구개발 확충에 목적을 둔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책방향은 개인정보의 범위와 제3자 제공의 범위 등에 대한 엄격한 법 해석 기초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공공기관과 주요 사업자의 고의적 개인정보 유출, 안전성 조치 회피 등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또 분야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처리 유형과 현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지난 1년 동안 제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안전성 기준을 확보했다는 등 성과가 있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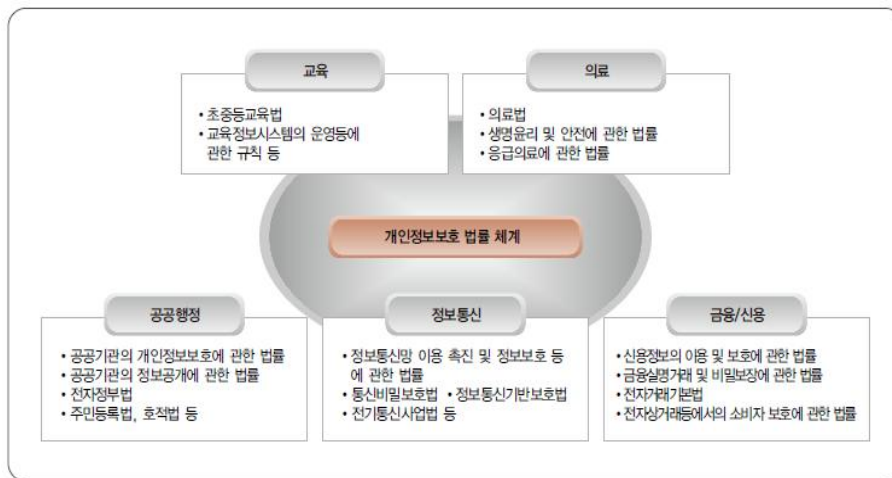
지난 1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4월에는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동이 진행됐다. 금융과 노동, 교육, 의료 등 분야별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 홍보를 진행하며 제도적 정비를 해왔다. 방통위, 금융위 등은 지난 4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인증마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대상 권역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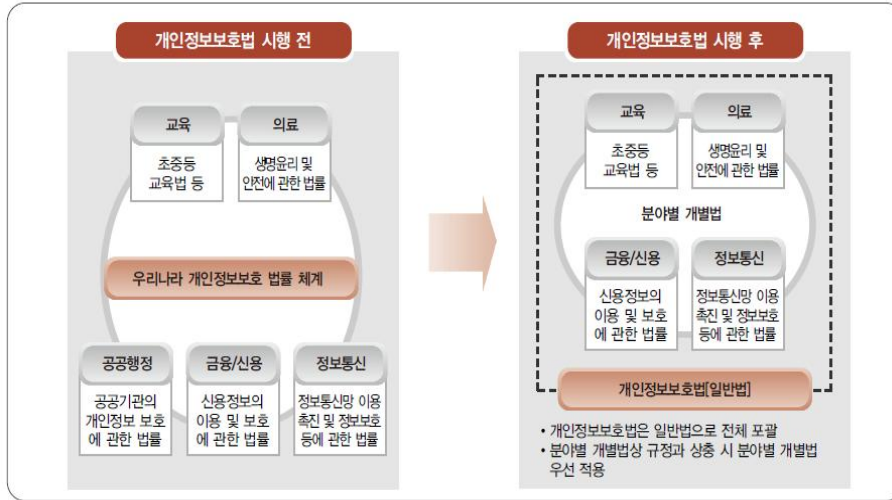
회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과 민간분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 컨퍼런스와 대학생 토론회 등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또 병원과 약국 등 27개 업종별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홍보도 진행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해 운영하고 현재 방송과 통신, 교육 등 분야별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PC백신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또 소상공인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민간은 법 소관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관리 및 규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일관성 결여, 특정 분야의 산업군이나 소규모 사업체 등 약 300만 사업자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등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필요성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Figure 2>와 <Figur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Figure 2> Privacy Existing Legal Framework(20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Figure 3> Changes in Privacy Law System(20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III. 문제점

1. 현행 개인정보보호 권리로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문제점

1) 성립배경과 개념

(1) 성립배경

현대에 들어와 사회적 범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국가가 복리증진이라는 과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한편 컴퓨터를 통해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11].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개념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자신에 관한 정보를 형성하고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형성,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하고,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임을 인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헌재, 2005.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이러한 의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아니하고(자기에 관한 정보의 자율적 결정권 또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는 행위를 배제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자기정보접근권·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봉쇄청구권, 자기정보삭제청구권),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의신청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좁은 의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한다[2].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성격과 주체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성격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존중의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인격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공권력 또는 제3자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라면,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적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정보프라이버시권의 핵심내용이며 각국 입법에서도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으로 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인정될 수 있다. 알 권리는 정보공개 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이런 알 권리는 자기의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 그 기록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접근권과 뉴스매체의 접근권을 포함한다.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주체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인격권이므로 자연인이 주체이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법인에게도 정보통제권이 인정되며 법인도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벗어나는 정도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관련문제에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보통제권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나오는 개념이므로 당사자는 개인에 한정되어야 하고, 타인의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러한 열람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타인의 정보에 자기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의 접근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3)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과 제한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

① 자기정보 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유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자기정보의 열람공개 청구를 받는 경우에 그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문서이외에 필름, 자기테이프 등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보보유기관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일반의 소송절차나 독립된 열람기관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2].

② 자기정보의 정정청구권

열람청구권자는 자기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기정보에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 정보보유기관은 그 부분을 수정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정은 개인정보에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을 때에는 이것을 추가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보유기관은 거부이유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기정보의 사용중지 및 삭제청구권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정보보유기관이 법규에 정한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법규의 취지에 반하여 부적정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은 당해 정보의 사용중지 또는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정보보유기관은 당해 청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사용중지·삭제의 유무 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

④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제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내용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익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즉,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등에 반하여 이를 허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근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조건, 정도, 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비례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제한은 구체적으로 열람청구권의 제한이나 사용중지·삭제청구권의 제한 또는 정보보유기관의 개인정보 시스템의 공시의무의 완화의 형태로 나타난다[2].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적용의 한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기존의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의 원칙 중의 정보내용의 원칙, UN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정확성의 원칙은 정보화의 시대보다 철저히 지켜질 것이다.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정보의 완전성과 최신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기의 은닉성, 정보의 창조성, 고유한 식별성, 고도의 추적성이라는 특성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기술은 정보의 생명주기 단계에서 다양한 침해요인의 유형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에서는 이러한 침해의 요인과 유형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은 정보를 수집할시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지 및 공정의 원칙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지의 원칙은 정보의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인 것이다. 공정한 원칙은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기술적 특성상 인식이 이루어지는 정보의 수집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법령으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정보수집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시간, 연속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수집이 되어 진다는 것은 일일이 동의와 고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인식 없는 정보의 획득은 고지·동의를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의 정보보호법제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조용한 컴퓨팅”, “사라지는 컴퓨팅”의 특징상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기존의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입하는 행위나,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하여 키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란에 마우스를 클릭하는 시스템은,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또는 RFID가 부착된 의류를 구입함과 동시에 정보가 입력되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시스템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1]. 즉, 유비쿼터스 환경의 핵심기술인 RFID 태그와 리더기의 잠재적인 은닉성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낳는다. RFID 생산품은 환경 의존적이어서 제품을 가지고 다니는 개인의 동의나 인지가 없이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RFID 기술의 적용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만일 태그가 부착된 상품을 신용카드로 구매시 그 제품의 특정 ID와 구매자의 신원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RFID 기술을 통해 획득되어진 개인정보는 개인의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프로파일은 소비자의 가치평가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론상 RFID 태그를 통해 개인을 추적할 수 있고, 다른 RFID 적용기술과 통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기의 은닉성, 정보의 창조성, 고유한 식별성, 고도의 추적성이라는 특성상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의 동의와 고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동의와 고지에서 한걸음 나아가 정보의 관리와 유통에 무게중심이 옮겨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동의·고지의 원칙보다는 정보의 관리와 유통의 관

점과 정보형성의 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정보의 주체가 참여하는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의·고지의 원칙을 포기 하자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유연한 측면에서 기존의 동의·고지의 절차를 특정 분야의 기술적 특징과 정보의 수집·활용 등의 유형을 고려하여 타당한 별도의 동의획득 및 고시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기존의 정보화 시대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보시스템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현재의 자기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진다. 따라서 개인정보시스템의 형성단계에서의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보다 확대된 즉,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이라는 기본권과 더 나아가 제3공간의 침해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자기공간형성관리통제권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즉,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프라이버시법제에 의한 법리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제3공간의 프라이버시에서 도출되어지는 자기공간형성관리통제권이라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 문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1년이었지만 그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인식의 변화를 유도했고, 많은 개선과 발전을 가져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의 그림자로 평가받고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현했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전담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어 보인다.

1) 개인정보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려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고, 식별성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띠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범위 설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누구를 기준으로 식별성을 따져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정보주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식별성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가지는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수차에 걸쳐 결합시키면 모든 정보는 식별성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도 있으며, '쉽게'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모호하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어떤 조건에서 쉽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 개인정보가 상대적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쉽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가지는 정보도 포함됨으로써 개인정보의 범위가 상식선을 넘어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이므로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지만,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살아 있는 후손의 정보도 내포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 있는 후손의 개인정보인지 의문이며, 개인의 정보가 아닌 법인·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지만 법인·단체의 임직원 정보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법조문 보다는 명확한 법조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법 표현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 정립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 제6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규율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제2조 제3호). 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순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의 범위는 단순한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자는 사실상 거의 없게 되는 결론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었다는 것이다. 두 법령 사이의 체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방안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제1안)과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순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하는 방안(제2안)이 논의 되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보호범위가 확대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현실적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법인, 단체, 개인 등 법 집행의 적용 영역을 달리하고 업계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나 분야별 별도 지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이 분산돼 행정주체 간 시각 차이로 인한 정책 혼선과 중복 규제, 규제 비용 추가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EU(유럽공동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행정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담당해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책 집행체계의 혼선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의 수준을 감안한 처벌 및 제재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집행영역을 구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는 규제를 하는 등 법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중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명시된 '사회통념상' 단어 자체도 모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에 대한 해석이 확실치 않다. 사회통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법 집행 기능과 총괄기능은 행안부가 행사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개별법의 정비도 필요하다.

(2)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경우 원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긴장관계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그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쉽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점은 계속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보유기관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제3조 및 제5조·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 반면, 같은 조항 각 호 단서에서 다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의 경우 이를 축소할 경우 알 권리 보장 차원의 관점이 다른 권리와 상충에서 균형을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9].

(3)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는 정보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그 적용배제를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일반법의 내용이고 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 취

급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상충되기에 개인정보법에서 명시한 사항은 권리보장 관점에서의 규율이므로 일반원칙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9].

(4) 신용정보보호법

일찍이 전부 개정된 신용정보법과 최근에 제정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구법에 비해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보호수단 및 정보수요에 의한 남용과 관련하여 나름의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아직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고 본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과 관련하여 서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opt-in 방식인바, 이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정보처리자 예컨대 금융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식들을 보면, 정보주체가 본래 의도하였던 특정 목적의 금융거래 이외의 목적 또한 함께 인쇄되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정보주체들은 그러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자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것이다. 즉, 형식적 사전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4].

IV. 해결방안

1.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

기존의 정보프라이버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의하여 보호되어 왔다. 하지만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지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기존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의한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1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기존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보다 확장된 개념의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정보관리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부터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라면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은 이러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형성되어지는 시점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즉,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는 자기정보형성참여권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는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야 유비쿼터스 정보프라이버시보호원칙중 하나인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질화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정보시스템 형성에서부터 정보주체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의 내용은 개인정보의 형성·유통단계별 및 통제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우선 개인정보가 형성되고 유통되는 단계에 따라 자기정보형성통제권, 자기정보수집통제권, 자기정보보유통제권, 자기정보이용통제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주체가 정보관리자를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행위유형에 따라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금지·삭제청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이 권리로 인정됨으로써 이 권리침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그 성격상 일단 침해되어 버리면 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진정한 프라이버시권리의 보호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어 진다[5].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와 같이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은 기존의 자기정보결정권이나 자기정보통제권에는 없었던 권리이다. 하지만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경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권리라 하겠다. 이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정보의 주체는 정보관리자에 대하여 자기정보형성시스템 구축시 이러한 정보형성에 참여하여 자기의 정보가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즉,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자기정보를 형성할 수 있게 정부로부터 자기정보형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기정보형성청구권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기정보형성시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기정보형성참여권이 있다. 여기서 자기정보형성참여권은 이러한 국가와 같은 정보관리자가 자기정보형성시스템의 구축시 정보의 주체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은 이러한 자기정보형성참여권을 청구하여 정보형성시스템의 구축시 이 시스템에 대한 자기정보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기정보형성청구권은 정보화시대의 정보의 격차로 인한 문제처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이러한 소외로 인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자기정보를 형성할 수 있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은 정보의 주체가 정보관리자에 대하여 자기정보형성을 청구하여 자신의 정보형성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즉, 이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에 의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감시사회를 사이버 원형 감옥에 비유를 하곤 한다. 사이버 원형 감옥에서 국민은 국가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구축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국가 작용의 내용과 형식이 결정되어지는 소외된 수동적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13]. 이로 말미암아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일어나며, 한편으로는 정보화의 격차로 인한 개인의 정보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침해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적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이러한 정보문화에 소외당하지 않게 정보문화 서비스를 받으며 이러한 시스템형성 단계에 참여하여 자기정보의 침해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에 의한 정보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등을 통해 시스템 구축당시부터 자기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보프라이버시를 시스템 구축과정에서부터 강조하게 되어 좀 더 실질적인 보호를 하게 된다. 물

론 이러한 정보형성시스템의 구축 과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후에 동의나 고지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구축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정보보호를 강조하여 혹 유비쿼터스시대의 동의나 고지의 곤란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유기관(시스템관리자)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자기정보열람청구권은 알 권리의 일환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보장되기도 한다. 개인정보가 문서 이외의 필름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3)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결과 정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그 부분을 정정하여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정정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보유기관은 거부이유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4) 자기정보사용중지·삭제청구권

정보보유기관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면 정보주체는 자기정보의 무단공표·이용의 금지 내지 사용중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당해 청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 판단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정보의 사용중지·삭제 여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5) 한계와 제한

여타의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도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정당성의 확보차원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여기서 법률은 일반성과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률의 일반성은 법률이 특정한 구체적 사건이나 사람에게만 적용되거나 직접 구체적인 처분이나 재판을 하지 않고 국민 일반을 그 규율대상으로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률의 명확성이란 규범의 의미내용으로

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된다[6].

공적 영역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침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영업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와 같이 여타의 기본권과의 충돌의 문제가 생기므로 이 경우 상호권익의 이익형량 여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8]. 즉,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된다. 반면에 민간부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고 이로 인한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생기며,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금지된다. 이 경우에 제3자적 효력은 간접적인 효력이 아닌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법률에 의한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처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를 해당 개인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개인의 정보처리에 있어서 그 목적이 수집단계에 미리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의 처리단계에 있어서도 수집시의 특정된 목적과 일치되게 저장 또는 이용되어야 한다는 목적구속의 원칙이 강조되며 특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¹⁾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의 제한은 구체적으로 자기정보형성참여청구권과 자기정보열람청구권이나 자기정보정정청구권 및 자기정보사용금지·삭제청구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으로 나타나는 바, 현재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향

1)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

개인정보보호법의 미래를 위해서는 법 적용 대상의 공공·민간 부문을 확대하고 전자적 문서의 수기문서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와 유출통지 및 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제도 등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을

1) 2005.0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다수의견) 심판대상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지문날인제도(이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아래에서 상세히 논하는 바와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권의 과잉제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위헌확인을 선언함이 마땅하다.

위해 필요시 익명형태 정보 제공, 파기시 복구와 재생 불가조치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적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입증책임과 동의 없는 국외이전 계약 불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적 요건 강화,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에 대한 요구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본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보주체 통지대상의 규모별 합리적인 통지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로데이 공격²⁾ 등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해킹들에 대한 방어를 위한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간 내에 안전조치 기준이 정기적, 비정기적 등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등 조치 기준이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돼야 한다. 기술과 이행능력이 불충분한 영역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익명화 지침 등을 통해 익명처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과 적용 문맥별 요구되는 익명화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익명화 기술에 대한 소개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미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예방 차원의 비용과 효과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정착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예방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비용 해결을 위한 국가 전문인력 양성정책 강구와 민관 내·외부 전문가의 효율적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파일 및 수기문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생성, 이용, 제공되는 PC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통해 정보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수집단계에서는 수집시 안전한 본인확인과 수집시 개인정보 입력 통제, 수집된 개인정보 전송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통제하며 특수유형 개인정보는 수집을 통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저장과 보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의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철저히 하며 안전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저장된 개인정보 침입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서버보안이 중요하다. 이용과 제공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시 안전인증이 필요하고 웹과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분석해 보안, 개인정보처리 단말기 통제, 개인정보 저장매체 통제 등이 필요하다. 파기 단계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파기 점검과 차단을 위해 저장매체를 파기하고 선택파일 파기 시 접근 통제와 기록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준수하는 등 기본법을 준수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 인증마크 수여, 디지털 포렌식 준비 등이 요구된다.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와 익명화, 서명 암호화, 스마트폰 프라이버시 기술, 포렌식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속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2) 운영체제(OS)나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취약점을 막을 수 있는 패치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나 해킹을 통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지난해 9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와 권한이 분산돼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행정주체들의 규제수단이 처벌과 제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현실적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규제를 투명화·합리화, 법령해석을 유연화·활성화,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체계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통계법과 국가안전보장, 언론, 종교 등과 관련해 업계 조항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자의 규모와 파일크기, 파일형태, 개인정보의 활용방법 등에 따른 예외가 없어 법 적용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개인정보파일의 크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파일 크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등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10].

현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공하는 자의 이름을 알리고 동의 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 동의 없는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불필요한 동의 획득과정은 면제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제공의 목적과 성격, 형태 등에 따라 제3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범위만을 알리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은 정보주체의 공개나 고지만으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시 동의의 예외사유로서 사회적 상당성 조항을 신설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건을 면제, 완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집행기능과 총괄기능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피해구제 업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즉 비현실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규모와 목적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차등화 하고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통일해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동의 획득 의무를 면제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 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한 제3자의 신원을 밝히고 예외적으로 공개나 고지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시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신원 공개, 고지는 위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반테러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시 동의의 예외 사유로서 사회적 상당성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법령 해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1차적 법령해석권을 가지는 각 행정기관이 전문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가진 집행부로서 적극적으로 법해석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적인 법 집행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개별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모두 DPA(Data Protection Authorities:개인정보보호기구)에 집중돼 있는 EU의 모델³⁾을 참고해 중앙행정기관

3) EU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행정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DPA)가 전담해 수행하고 있

에 의한 통일적인 법 집행체계의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

3.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원칙적 개별동의의 강제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동의방식은 금융감독원의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 모범규준」에 포함된 서식에서도 엿볼 수 있는바, 당해 금융거래 및 동 금융거래에 필수적으로 부합되는 부수적 목적 외에는 별지를 이용한 동의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사전 동의 예외관련 규제강화 및 이용목적의 합리적 제한

정보주체가 허용한 최초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지속적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수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범위가 적절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남용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V. 결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전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의 실효성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상의 정보기본권의 제 정립에 따른 하위 법령의 규범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제도정비방안을 분석함으로써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도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관련 법령의 자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개별 법령들의 정합성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인 실행이 가능하며 실

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에 기초 자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본 논문에서 부족했던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 고찰 및 관련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좀더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Kang, Dal Cheon. 2004. Legal System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Chung Ang Law Review*. 6(2): 7-36.
- [2] Kwon, Yeong Seong. 2008. *Constitutional Law*. BOBMUNSA. CO.
- [3] Kim, Min Ho. 2011. A Study on the System Maintenance Pla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 [4] Maeng, Soo Seok. 2010. The Main Contents and Legal Issues of the Law for Personal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on Financial Transactions. *Law Review*. 37: 289-318.
- [5] Baek, Yun Chul. 2003. Human Right to Control oneself and Human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oneself in the Constitutional Law.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 [6] Suh, Geo Suk. 2006. Technology & law. *Fides*. 9(3): 209-236.
- [7] Lee, Kyoung Ho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12 Privacy Forum.
- [8] Lee, Min Young. 2005. Refocusing of Jurisprudence on Privacy. *Information & Communications Policy*. 17(16): 23-43.
- [9] Lee, Min Young. 2012. Since Enactment of the Privacy Act Maintenance Measures Related Law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cy Act and the Legislative Challenges Conditions: Academic Seminar.
- [10] Lee, Seong Yeob. 2012.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year. 2012 Privacy Forum.
- [11] Lee, Pil Jae. 2009.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Ubiquitous Era. Ph. D. Dissertation. Chungbuk University.
- [12] Hyeon, Dae Ho. 2011. Of the Privacy Act and other Laws Ensuring the Integrity and Privacy Regulations.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 [13] Han, Sang Hie. 2001. National Surveillance and Democracy, National Register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blems of System. The 2nd Joint Network Privacy Debate.
- [14]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

ual Report. Seou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15]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08.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Data Protection Laws. Sejo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

- [1] 강달천. 2004.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앙법학. 6(2): 7-36.
- [2] 권영성. 2008. 헌법학 원론. 경기: 법문사.
- [3] 김민호. 201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제도정비방안. 한국인터넷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 [4] 맹수석. 2010.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37: 289-318.
- [5] 백윤철. 2003.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결권. 헌법학연구. 9(3): 209-236.
- [6] 서거석외 17인. 2006. 기술과 법. 서울: 피데스.
- [7] 이경호. 2012.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 개인정보보호 발효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2012 개인정보보호포럼.
- [8] 이민영. 2005.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의 재조명. 정보통신정책연구. 17(16): 23-43.
- [9] 이민영. 2012.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실태와 입법과제 학술세미나.
- [10] 이성엽. 201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의 성과. 개인정보보호 발효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2012 개인정보보호포럼.
- [11] 이필재. 2009.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현대호. 2011.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한국인터넷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 [13] 한상희. 2001. 국가감시와 민주주의,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련제도의 문제점.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2차 공동토론회 요지집.
-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개인정보보호연차보고서. 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5] 한국법제연구원. 2008.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한 입법평가.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이필재: 충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u-City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격차의 개선방안(2010)”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정보법과 법정보, 법교육 등이 있다(lawncm@chungbuk.ac.kr).